

숙종 연간 조·청 관계의 맥락과 대보단의 시대적 기반

김성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선시대사 전공

sonnykim@korea.kr

- I. 머리말
 - II. 대외관계의 변화와 적응을 위한 노력
 - III. 대외관계의 안정과 이념의 정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청 관계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장기간 지속하였던 명대 중화질서의 관성과 청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의식하면서, 중대한 역사 전환기에 노정된 조선 식자층의 사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¹ 그 가운데 조·청 관계의 속성을 의례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주로 중화주의와 화이론의 자장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명과 청을 대하는 조선의 차별적 입장과 조선 전·후기 외교 의절의 질적 변동 등 중화질서의 균열과 화이의 전도에 추동된 역사 현상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²

명과의 관계를 부자의 의리로 결속시켰던 17세기 조선의 군신이 명·청 교체기에 경험해야 했던 현실과 이념의 괴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청에 의한 동아시아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심대한 변화에 봉착한 그들이 상당 기간 기존 질서의 회복을 희구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방증하는 사례만으로 수차례 변화를 거듭한 조·청 관계의 속성을 여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지하듯, 양국의 관계는 17세기 초반 이래 극히 불안한 상태로 출발하였

-
- 1 조·청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한정된 지면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방대한 분량이다. 관련한 주요 연구성과는 김영식,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아카넷, 2018)와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소명출판, 2019) 등 근저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 2 이와 같은 시각을 공유하는 연구로는 김경록, 「朝鮮時代 使臣接待와 迎接都監」, 『韓國學報』 117호(2004);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 사학보』 63호(2012); 김윤주, 「순조대 『빈례총람(賓禮總覽)』의 편찬과 빈례 정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8) 등이 주목된다.
 - 3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 사회적 기능」, 『한국문화』 32호(2003);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134(2006).

지만, 이후 조정 국면을 거치며 18세기 전환기에 즈음해서는 이미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⁴ 청의 입장에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립·완성하고 조선을 그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였던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 초중반까지의 시기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의 해계모니를 인정·수공하는 가운데 전통적 유교 담론의 틀 안에서 청과의 공존을 합리화 하는 이념적 모색을 꾀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⁵ 조선이 이 기간 존주론적 이상과 청이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한 체제 순응과 국가의 유지를 위한 이념 부식의 과제를 동시에 직면하였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청 중심의 국제질서 내에 안착하기까지 조선이 겪었을 대내외적 갈등과 모순, 변화와 적응의 실상을 직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화주의적 이분법에서 탈각하여, 중원의 변화에 조용한 조선 내부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지었을 당대인들의 사유체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어떠한 역사 현상의 표면적인 동향에 대한 단선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그 사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감안하면서, 조선 후기 대외관계와 외교의례의 속성에 주목하였던 앞선 논의의 범주에 당대 정치와 사상의 동향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를 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청사대의 현실과 존주대외의 이상이 복잡하게 혼재하고 치열하게 길항하였던 숙종 연간을 주요 분석 시기로 하여, 이즈음의 중원 정세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동향, 그리고 조·청 사이의

4 17세기 조·청 관계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소명출판, 2019); 장정수,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이명제,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참고.

5 대청체제의 수립으로 야기된 전통적 사유체제와 새로운 국제질서 사이의 모순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이념적·문화적 대응에 대해서는 이정일, 「조선후기 지식인 식에 나타난 유교문명과 보편성」, 『韓國史學報』 37호(2009) 참고.

외교 현안과 그 반향을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나아가 명·청 교체라는 중대한 변화 속에서 이념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고 왕정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개진되었던 조선 군신이 노력이 명 황제에 대한 국왕의 독점적 의례 공간인 대보단의 건립으로 귀결되었던 시대적 맥락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선 연구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었던 숙종 연간의 병자호란 관련 현상 사업 경과 및 국왕 친향 의례 확대 경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결과들을 거시적으로 엮어보고, 그 근저에 흐르는 정치적 함의를 검출하고자 한다.

II. 대외관계의 변화와 적응을 위한 노력

1. 청 내부 정세 안정과 대조선 강경 기조 형성

1644년 입관 이후 청은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방의 지배권을 공고히 한 후 차츰 강남지방까지 세력을 넓혀 나아갔다.⁶ 1661년 운남에서 남명 영력제의 복명운동을 진압한 시기를 기점으로 청의 중국 본토 평정은 일단락되었으나, 1673년 오삼계 등 삼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킴에 따라 중원의 지배권 확립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⁷

삼변의 난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의 조야에서는 이를 기회로 한 복명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다.⁸ 이즈음 즉위한 숙종은 당시 청 내부의

6 청의 입관 과정과 북경 천도 이후 기인의 이주와 정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민수, 『清的 入關과 旗人の 北京 移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참고.

7 임경준, 「三藩의 亂과 清朝의 盛京地域 支配體制 強化: '新滿洲' 佐領의 이주와 三藩의 安插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이재경, 「삼변(三藩)의 亂(亂) 전후(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한국사론』 60호(2014) 참고.

8 당시 조선에서 고조되었던 남명(南明) 부흥에 관한 여론의 동향은 우경섭, 『조선중

위기 동향을 면밀히 탐문하는 가운데⁹, 평안도의 진보를 새로 정비하고 도성으로 통하는 주요 거점에 진을 설치하는 등 최전방 지역의 중층적 방어망 구축에 힘썼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⁰

이처럼 중원의 위기 상황을 틈타 복명을 희구하고, 국경 지역의 방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던 조선 내부의 상황을 청은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¹¹ 그리고 이로 인한 불편한 감정은 1680년대에 들어 청이 중원의 해계모니를 확고히 장악함에 따라 점차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반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와 관련하여, 이 시기 조·청 양국 간의 주요 외교 현안으로서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범월(犯越) 사건이 주목된다. 서북 변경에 거주하는 조선의 변민(邊民)이 금령을 어기고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는 청의 입관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사안이었다.¹² 그러던 것이 청 강희 연간(1661-1722) 월경자에 대한 처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범월 사건이 중대한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는 일이 잦아졌다.¹³ 일례로 1680년(숙종 6) 4월 함경도 온성(穩城)의

화주위의 성립과 동아시아』(유니스토리, 2013), 133-138쪽 참고. 이 시기 북벌론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허태용, 「17·18세기 北伐論의 추이와 北學論의 대두」, 『대동문화연구』 69호(2010) 참고.

9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11월 7일 2번째 기사.

10 숙종 초반의 최전방 방어 시설 정비 경과에 대해서는 정해은, 「숙종 초기 평안도의 변장 증설과 방어 체제의 변화」, 『사학연구』 120호(2015) 참고.

11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3일 1번째 기사. “上迎勅于慕華館，遠接使吳始壽請對啓曰，臣與彼人同行，觀其氣色，顯有疑我之意。輒曰，天下勢如此，東國必薄待我，今果然矣。”

12 청 순치 11년(1654) 조·청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범월과 살인 사건으로 인해 조선 국왕에 대해 최초로 벌은(罰銀)이 부과된 바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경,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호(2019), 409쪽 참고.

13 이전 시기부터 빈번히 이루어지던 범월 행위가 이 시기 양국 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삼변의 난 이후 성경(盛京) 지방에 대한 청의 지배력 복구

백성이 두만강을 넘어 청나라 강역에서 나무를 하다가 청 관리에게 적발된 사건¹⁴, 1685년 9월 함경도 삼수군의 주민이 압록강 삼도구(三道溝) 부근으로 넘어가 산삼을 캐다 청 관리들을 살상하였던 사건은¹⁵ 1680년대 조·청 간에 큰 물의를 빚었던 범월의 대표적 사례들이다.¹⁶

아울러 이즈음 조·청 양국 간에 문서위식(文書違式) 시비가 빈번히 제기되었던 사실이 눈에 띈다. 이 시기 조선이 보내온 외교 문서가 청이 정한 바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文書違式]로 청 예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1679년(숙종 5)에 조선에서 보낸 동지표문(冬至表文)에 강희제의 휘 현엽(玄燁) 중 ‘玄’을 범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으며¹⁷, 1680년(숙종 6)에는 함경도 온성 백성의 범월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보낸 사은표문(謝恩表文)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선 국왕에게 벌은 5천 냥이 부과된 사실이 있었다.¹⁸ 1685년(숙종 10)에도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의 부고 시 청 황제와 황태자에게 각각 보낸 사사제표문(謝賜祭表文)과 사사제전문(謝賜祭箋文)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있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임경준, 「三藩의 亂과 清朝의 盛京地域支配體制強化: ‘新滿洲’ 佐領의 이주와 三藩의 安插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4 『同文彙考』 原編 卷50, 犯越 2 我國人, 康熙 19年 7月 28日.

15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3 我國人, 康熙 24年 9月 29日.

16 이 시기의 주요 범월 사례와 그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호(2006); 이화자, 『朝淸國境問題研究』(집문당, 2008); 임현채, 「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朝鮮의 對淸 태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17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康熙 18年 2月 13日, 「禮部知會冬至表內犯回避字寬免咨」; 같은 책, 康熙 18年 12月, 「禮部知會准請及奏文違式咨」;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2월 19일 2번째 기사.

18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康熙 21年 10月 8日, 「禮部知會奏文違式罰銀咨」;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1월 6일 2번째 기사. “先是, 淸國以我國奏文中, 不書御諱, 只稱國王, 謂之大干法紀, 欲遣使查問, 改以罰銀一萬兩, 又減五千兩.”; 『同文彙考』 原編 卷41, 飭諭, 「進罰銀咨」.

었다.¹⁹ 이처럼 강희 연간에는 조선의 외교 문서에 대한 문서위식 시비가 종종 제기되었는데²⁰, 이들 대부분이 1679년부터 168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1679년 이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는 1661년(현종 2)의 단 1건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²¹

문서위식 시비가 빈발하였던 시점은 곧 오삼계의 반란이 거의 평정되어 가던 즈음이었는데, 숙종 연간 들어 처음으로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였던 시기는 곧 오삼계가 사망한 직후인 1679년이었다. 1678년 8월 오삼계의 사망을 분수령으로 하여 청 내부의 반란은 거의 정리가 되었고, 이에 청이 자국의 의례 질서를 주변국에 제시하고 이의 준행 여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었던 사실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시한 의례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청과 이에 대한 조선의 회피 행위로 인한 시비가 숙종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실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²²

조·청 양국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이래 청의 칙사가 황제의 조칙을 가지고 조선에 출재할 경우 조선의 국왕이 직접 서교(西郊)에 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혀 절을 하는 등 교영(郊迎)의 예로써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²³ 이와 같은 영조칙(迎詔勅) 의례는 황제의 조칙과 사신에 예우를 행함으

19 『同文彙考』原編 卷41, 飭諭, 「禮部知會謝祭箋知道及飭不合字咨」; 같은 책, 康熙 24年 3月 25日, 「謝字句不合表」.

20 이 시기 조·청 간에 발생한 문서위식 시비에 관한 내용은 夫馬進의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02-115쪽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1 『同文彙考』原編 卷41, 飭諭, 「禮部知會各犯免罪及飭咨內王旨字咨」.

22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 2월 9일 2번째 기사.

23 『通文館志』 1권, 「郊迎儀」, “…… 當日早朝, 殿下率宗親文武百官, 詣慕華館入幄次後, 奏時官進告政院, 與請來官馳進弘濟院【使以止宿碧蹄, 犯夜入京有弊, 故稟請設館于弘濟院, 順治戊子, 因有勅旨建置】請來【自上不爲郊迎, 則都監日次郎廳, 待開門詣政院, 闕內舉動相應後, 聽傳教, 馳進請來】[…] 殿下具翼善冠袞龍袍出次, 左右贊禮導, 殿下就祇迎位鞠躬

로써 상국에 대한 존송을 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 행위였다. 그러나 외국의 사신에게 일국의 왕이 국궁(鞠躬)의 예를 친행하는 문제는 국왕의 대내적 위상과도 직관된 사안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영조칙 의례의 친행 여부는 조·청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조·명 관계의 형성 과정에서도 민감하게 여겨지던 사안이었다.²⁴

실제 숙종 연간 초반에는 국왕의 건강 등을 사유로 한 교영례(郊迎禮) 친행 회피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숙종 즉위 직후에는 공제(公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 국왕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청사에게 교영을 멈출 것을 요구하거나 실제 시행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여러 번 보인다. 실제 1676년부터 1684년까지 숙종은 교영례를 제대로 거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²⁶, 이는 자연스럽게 청사의 불만과 의심을 자아냈으며²⁷, 일부 청사는 교영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홍제원에서 바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 겁박하여 숙종의 교영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²⁸

【百官同】使捧勅書，置於龍亭中【有賜物則，置於彩轡】殿下平身【百官同】……”

- 24 대명외교에 있어 조선은 영조칙 의례를 다룬 의주를 이행하여 명 중심의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국왕 및 왕조의 위상을 높이고자 의례를 최대한 간소하게 행하려 하였고, 이것이 명 사신들과의 마찰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바다, 「朝鮮 初期 迎詔勅 관련 儀註의 성립과 朝明關係」, 『역사민속학』 40호(2012) 참고. 이와 함께 여말선초 명에 대한 영조례의 시행 경과와 관련 의주 정비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 고찰한 최중석의 「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86호(2018)와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 『한국문화』 83호(2018) 등 일련의 논고들이 주목된다.
- 25 숙종 즉위 초반 건강을 사유로 한 교영례 친행 회피로 조·청 양국 간의 갈등이 야기된 상황은 김창수, 「조선후기 조선·청 관계와 국왕의 건강 문제: 숙종 초반 교영례(郊迎禮)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 통권 66호(2020)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 26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해안, 2011), 310-312쪽.
- 27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3일 1번째 기사.
- 28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4월 1일 2번째 기사; 4월 2일 1번째 기사.

당시 조선의 군신이 교영례 친행을 가급적 회피하려 노력하였던 것은, 연소한 국왕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조선의 국왕이 청 사신에게 절을 하고 예를 행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는 관념 때문이다. 1681년(숙종 7) 4월 청사에 대한 교영 접대를 반대하였던 교리 임영(林泳)은 임금 직접 교외에 나가 칙사를 맞이하는 것은 국왕의 위신과 관련하여 매우 치욕스러운 사안이며, 관료들이 청사를 설득하여 교영을 면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청인들에게 조선을 알보는 빌미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²⁹ 이러한 관념이 존재하였기에 숙종 초반에는 원접사를 파견하여 교영례를 대행하고, 대신을 파견하여 사신을 접대하는 일이 빈번히 목격된다.³⁰

전근대 시기 중국의 황제는 주변 국가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문죄(問罪)’를 통해 주변국을 통제하는 외교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명·청 시기 중국은 고려와 조선에 과중한 세공(歲貢)을 요구하여 성의를 시험하거나 출병을 위협하고, 책봉 요청을 거절하거나 벌은(罰銀)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문죄를 시행한 바 있다.³¹ 상기 문서위식 시비는 조선에 대한 강희제의 문죄 사례로 볼 만한 사안들이다. 그리고 이는 청 내부에서 반란이 진행되는 동안 복명을 희망하고 복벌을 논하는 등 반청적 자세를 견지하였던 조선에 대한 징치(懲治)를 통해 조선을 청 중심의 국제질서 안에 공고히 포섭하기 위한 기도였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

종래 명이 구축했던 천하질서를 계승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청에게 있어 대명체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였던 조선과의

29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4월 2일 1번째 기사. “校理林泳上疏曰, 今日大駕將不免出郊迎勅, 臣誠不勝痛惋激切之至.”

30 숙종 초반 국왕의 영조칙 의례 친행 현황과 이로 인한 갈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화자의 『한중국경사 연구』(혜안, 2011), 5장 3절 참고.

31 명·청 시기 중국의 問罪와 관련한 내용은 夫馬進의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장 「명청 중국 대조선 외교에서의 ‘예’와 ‘문죄’」가 참고된다.

관계는, 대청체제의 완성이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입관 전 유일한 조공국이었던 조선이 이제 대청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인식되었고, 조선이 점하였던 중요한 위상만큼 더욱 엄격한 통제와 제재를 가하였다는 견해에 주목하게 된다.³²

2. 조선의 대청 현안 대응과 외교 의절 정비

조·청 관계의 속성을 앞선 시기의 사례와 비교하면, 양국 관계는 초반의 갈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조로웠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³ 그만큼 속중 초반의 갈등 상황은 조·청 관계의 긴 흐름 속에서 특기할 만한 지점이라고 하겠다. 당시 조선의 군신은 청으로부터의 압박에 원만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골몰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고심의 흔적이 1680년(숙종 6) 4월 함경도 변민의 범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다. 당시 강희제는 범월인들의 사형을 감하고 조선 국왕에 대한 벌은 면제하는 등 관대한 조치를 베풀었는데³⁴, 아래의 인용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청 예부에 보낸 조선 국왕의 자문 내용 중 강희제의 조치에 대하여 언급한 일부 대목이다.

32 대청체제의 형성 과정과 그 체제 내에서의 조선의 위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민음사, 2012); 손성욱, 「清朝貢國使臣儀禮의 形成과 變化」, 『동양사학연구』 143호(2017); 손성욱, 「王世子 冊封으로 본 淸·朝 관계(康熙 35년-乾隆 2년)」, 『동양사학연구』 146호(2019); 이재경,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호(2019);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소명출판, 2019) 등 논저가 참고된다.

33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일조각, 1970), 108쪽.

34 『同文彙考』原編 卷50, 犯越 2 我國人, 康熙 20年 2月 12日, 「禮部知會寬免咨」.

생각해 보건대, 저는 나라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변민들이 함부로 대국의 밝은 법을 어기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법에 따라 헤아려보면, 마땅히 중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황상께서 특별히 넓은 아량을 품으시어 오히려 너그러운 용서의 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제가 건책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범인들도 함께 차례대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초보은의 은혜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군주로서의 법도를 더욱 성실히 할 뿐이니, 황상께서 소국을 동정해 주시는 지극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³⁵

위의 자문에는 황제의 관대한 조치와 소국에 대한 지극한 은혜를 치하하는 내용이 공순한 수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 같은 언사는 이 시기 조선이 청에 보낸 다른 외교 문서에서도 쉽게 확인되는데, 그중에는 청 황제의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대한 사은의 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小邦은 大國을 섬기길 지금까지 오십여 년으로, 再造의 은혜에 감사하며 대대로 藩屏의 직무를 지켜 왔습니다. 寡君의 시대에 이르러선 조상의 뜻을 준수하여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두루 더하였습니다.³⁶

위의 인용문은 1686년(숙종 12) 진주사(陳奏使)로 연행 중이던 우의정 정재송(鄭載嵩)이 범월에 대한 조선 국왕의 책임 면제를 요청하며 예부에 보낸 정문(呈文)의 일부이다. 그 내용 중에 보이는 ‘재조의 은혜[恩造]’라는 표현은 ‘병자호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게 하였던 청 태종의 은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임란 시 조선을 구원해 준 명 황제의 ‘재조지은’을 그대로 청 황제에게 옮겨간 듯한 느낌을

35 『同文彙考』原編 卷50, 犯越 2 我國人, 康熙 20年 9月 3日, 「回禮部疏防官擬罪及犯人滅死咨」.

36 『同文彙考』原編 卷51, 犯越 3 我國人, 康熙 25年 4月 20日, 「呈禮部文」.

주는 수사이다.

이로부터 불과 50년 전인 1636년(인조 14)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참석하였던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 등이 ‘대청황제’라는 ‘참람된’ 호칭이 담긴 청의 국서를 명백히 거부하지 않고 받았다가 중도에 몰래 버리고 온 사실만으로 논핵을 받아 유배되고³⁷, 청에 대한 칭신을 하는 것은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 인식하였던 조선 군신의 입장에서는³⁸ 청을 향해 ‘재조지은’을 논하는 현실이 실로 개탄스러웠을 것이다.³⁹ 하지만 당시 조선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청에 대한 지성사대를 행하고, 청의 헤게모니에 순응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했다. 청으로부터의 압박을 최소화하고 더 큰 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신이었을 것이다. 숙종이 범월 사건 등 양국 간 갈등에 대한 강희제의 관면 조치에 곧바로 사은사를 파견하여 사례하고, 16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청 사신에 대한 교영례를 거의 예외 없이 친행하였던 사실⁴⁰ 또한 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대청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선 측의 노력은 외교 실무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개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을 오랑캐로 여겨 왔던 조선의 입장에서 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추종하는 것은 종래의 의리와 명분에 비추어 심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노골적으로 강요되는 청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는 없었다. 더구나 이 시기 양국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외교 문서의 작성이나 사신의 접대 시 준용되었던

37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4월 26일 2번째 기사.

38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19일 3번째 기사.

39 대청체제의 수립과 이에 수반한 조·청 간의 의례 논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허태구의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소명출판, 2019), 제3장 참고.

40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해안, 2011), 315쪽 참고.

예제와 격식에서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 국왕의 대내적 위상에 손상이 가하여졌던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청과의 외교 교섭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시된 의절을 정리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까지 외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빈례(賓禮) 의절이 담긴 서적은 『국조오례의』가 유일하였다. 조선 전기에 걸쳐 국가 제반 의례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던 『국조오례의』의 「빈례」 조에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를 위시하여 중국 사신을 위해 베풀었던 각종 연향 의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망궐(望闕)·영조(迎詔)·영칙(迎勅)·배표(拜表) 등 명 황제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절은 빈례가 아닌 「가례(嘉禮)」 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빈례」 조에는 명 사신을 위한 연향 의절 및 일본, 유구, 여진 등 교린국을 대상으로 한 의절만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처럼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기반한 사대교린 원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국조오례의』는 기존의 중화질서를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대청체제 내의 외교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숙종 연간 대청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인 최석정(崔錫鼎)이 사역원제조로 있던 1708년(숙종 34), 사역원 당상 역관 김지남(金指南)·김경문(金慶門) 부자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과의 통교에 관한 사적 및 의절 등의 사실을 수록한 『통문관지』를 편찬하게 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1720년(숙종 46) 한학관(漢學官) 이선방(李先芳) 등이 간행하여 조정에 진상한 『통문관지』에는 인조 이래 숙종 대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대청 외교 실무의 경험에 기반한 의절과 업무 지침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조·청 외교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개진되었

41 한형주, 「對明儀禮를 통해 본 15세기 朝-明관계」, 『역사민속학』 28호(2008); 유바다, 「朝鮮 初期 迎詔勅 관련 儀註의 성립과 朝明關係」, 『역사민속학』 40호(2012).

던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우선, 『통문관지』에는 『국조오례의』에 비해 더욱 상세한 빈례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일례로,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연조정 사의’에는 사신이 도래한 당일의 행례 절차만 수록되어 있는 반면⁴², 『통문관지』에는 청 칙사의 파견 사실을 전하는 패문(牌文) 접수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 도착 시 배푸는 각종 연향, 교외에서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 궁궐에서의 칙사 접견과 칙서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의절이 총 26항목에 걸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⁴³ 그리고 각종 의절의 전거로서 승덕과 순치, 강희 연간의 칙유(勅諭)와 청 조정의 조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강희 연간에 찬술된 『대청회전』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통문관지』 「교영의」 조에 국왕이 직접 칙서를 맞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 조항을 부기한 사실이 주목된다.⁴⁴ 숙종 초반 교영례의 친행 여부를 두고 청과 갈등을 겪은 이후인 1685년 이후⁴⁵ 숙종이 반드시 교영과 교송(郊送) 의례를 친행하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관련 의절의 내용에 국왕 친행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부기한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설정된 연유를 파악하는 데에는 조선 전기의 유사한 사례가 참고된다.

조선 전기에도 영조칙 의례의 친행과 관련하여 명 사신과 조선의 관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는 조선 국왕이 황제의 조서를

42 『國朝五禮儀』 5권 「賓禮」 宴朝廷使儀.

43 『通文館志』 4권 「事大」 下.

44 『通文館志』 1권 「郊迎儀」. “當日早朝, 殿下率宗親文武百官, 詣慕華館入幄次後, 奏時官進告政院, 與請來官馳進弘濟院【使以止宿碧蹄, 犯夜入京有弊, 故累請設館于弘濟院, 順治戊子, 因有勅旨建置】請來【自上不爲郊迎, 則都監日次郎廳, 待開門詣政院, 闕內舉動相應後, 聽傳教, 馳進請來】”

45 『同文彙考』 原編 卷51, 犯越 3 我國人, 康熙 25年 閏4月 3日, 「禮部知會呈文陪臣免嚴拿發與該國治罪咨」.

맞이할 때 오배고두(五拜叩頭)의 예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명 사신의 요구에서 초래된 사단이었다. 당시 조선의 군신은 『명집례』를 준용한 「번국접조의주(蕃國接詔儀註)」를 제시하여 조선 국왕이 오배고두의 예를 거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명사의 요구를 회피한 바 있었다.⁴⁶ 유교적 예제에 기반한 전근대 시기의 국가 관계 속에서 각국의 분의(分義)는 정밀한 의절을 통해 가시적으로 구현되었으므로, 특정 의례의 시행 여부는 그 근거가 되는 의주의 내용에 따라 판가름났던 것이다. 이러한 선례를 염두에 두었을 때, 숙종 초반 교영례 친행 여부를 두고 한바탕 갈등을 겪은 이후 이와 관련한 의주가 보강되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처럼 『통문관지』에서 처음으로 집대성된 대청 외교 의절에는 인조대 이래 숙종 중반까지 축적된 대청 외교 교섭의 경험과 선례가 상세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작성된 외교 의절의 내용에 착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① 영조칙의례와 망궐례와 같은 대명 외교 관련 주요 의절이 『국조오례의』 「가례」 조에 수록되어 중요시되었던 반면 대청 외교의 동일한 절차는 국가전례서에 수록되지 못하고 외교 지침서인 『통문관지』에만 수록된 사실, ② 인조대 이후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가 편찬되지 않고 청 사신 접대 기록은 등록 형태로만 정리되었던 사실⁴⁷, ③ 청 황제가 사여한 조선 국왕의 시호(諡號)를 신주에 쓰지 않고 외교 문서에만 사용하거나 청 황제의 사제(賜祭)·사시(賜諡)와 관련한 기록이 매우 소략한 사실 등에 착안함으로써⁴⁸, 명 제국질서를 철회한 조선이 새롭게 수립된 청 제국질서를 거부하고 명과 청을 향한 차별적 의례 설정을 통해 뿌리 깊은 중화주의적 관념을 표출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46 유바다, 「朝鮮 初期 迎詔勅 관련 儀註의 성립과 朝明關係」, 『역사민속학』 40호(2012), 제4장.

47 김경록, 「朝鮮時代 使臣接待와 迎接都監」, 『韓國學報』 117호(2004).

48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3호(2012).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청 외교 의절은 전대에 비해 더욱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확인한 청 황제와 조정의 각종 조치에 따라 의절의 세심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대청 교섭 과정에 종래의 화이론적 관념에 따른 반청적 입장이 발현된 바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청 외교를 직접 수행해야 했던 실무선에서는 청이 설정한 예제를 성실히 준행함으로써 외교 의절로 인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세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Ⅲ. 대외관계의 안정과 이념의 정비

1. 대청사대와 반청의식의 길항

1680년대 중반 이후 청 내부 정세의 안정 기조에 힘입어 조선에 대한 청의 강경한 입장은 점차 유화적인 자세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⁴⁹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청 외교에서 공순한 자세를 유지하고, 청의 예제를 준용하여 외교 의절을 정비·준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조선의 노력도 어느 정도 효용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실제 1689년(숙종 15) 이후 사대문서의 형식이나 문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⁵⁰ 번방의 예를 다하였던 조선의 공순한 자세는 청의 입장에서도 ‘무번자소(無

49 강희연간 청의 중원 지배 안정과 조·청 관계의 ‘예제적 전환’에 관한 내용은 이명재,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제6장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50 夫馬進,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02-119쪽 참고.

藩字小)의 의리에 맞게 조선을 대우할 명분과 의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강희제는 병자호란 당시 청 태종이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국가 체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미루어 명이 임진왜란 시 조선을 구원하여 도왔던 '재조지은'에 상응하는 '은혜'로 규정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데⁵¹, 이는 조선이 명에 대해 의리를 지키려 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자연스레 청에 대한 의리의 지킬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조선은 1637년 이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사대의 의무를 수행하고 번국의 분의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청에 대한 내면의 반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고, 청 역시 조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1680년대 이래 10여 년에 걸쳐 조선에 대한 청의 외교적 압박이 심화되었던 것은 양국 사이에 내재한 갈등이 겹으로 드러나 폭발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이 기존 명의 통치 영역에 대한 정복을 완수하고 중원의 해계모니를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의심과 경계의 시선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소멸되어 갔다. 아울러 16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희제의 주요 관심사는 서북의 준가르 정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준가르 세력의 항배를 놓고 러시아와의 경쟁에 보다 고심해야 할 상황이었다.⁵² 대청체제 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듯한 조선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의 필요와 여유가 희박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강희 연간에는 연인원 114명의 칙사가 54회에 걸쳐 조선에 파견되었

51 『聖祖仁皇帝實錄』 卷227, 康熙 45年 10月 23日. “諭大學士等曰, 觀朝鮮國王, 凡事極其敬慎. 其國人亦皆感戴. 聞其國有八道. 北道與瓦爾喀地方土門江接界. 東道接倭子國. 西道接我鳳凰城. 南道接海, 猶有數小島. 此等地方, 太宗文皇帝定朝鮮之役, 我兵無處不到. 以已破之國, 我朝為之重加營建, 俾安堵如故. 是以前國人於太宗文皇帝駐軍之地, 樹立石碑, 備書更生之德. 累世感戴, 以至於今. 且彼更有可取者, 明之末年, 彼始終未嘗叛之, 猶為重禮義之邦也.”

52 홍성구, 「청질서의 성립과 조청 관계의 안정화: 1644-1700」, 『동양사학연구』 140호 (2017), 168-170쪽 참고.

다. 이는 옹정 연간(1722-1735) 이래 1890년까지 168년 동안의 연평균 0.34회의 칙사가 파견되었던 사실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빈도임을 알 수 있다.⁵³ 이러한 차이에는 강희 연간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대한 실무성 칙사의 파견이 잦았던 사실이 반영되어 있으리라 짐작된다. 아울러 청의 대조선사행의 시기별 빈도수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662-1692년까지 39회의 칙사가 출래하여 매년 1.25회의 칙사 파견이 있었던 반면, 1693-1722년 사이에는 15회의 칙사가 파견되어 1년당 빈도가 절반 이하인 0.5회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⁵⁴ 특히 1689년 이후로 조선에 대한 청의 칙사 파견은 점차 감소되었으며, 책봉과 같은 의례적인 사유로 인한 사신의 파견 이외에 외교 분쟁으로 인한 질책성 칙사의 파견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양국 간의 관계가 점차 안정화·예제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즈음 조·청 관계의 안정적 추이를 더욱 여실히 살피기 위해 1697년(숙종 23) 이루어졌던 조선의 청 미곡 도입과 강희제의 진제미(賑濟米) 지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숙종 연간을 전후로 한 시기의 조선은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의 이상 기후, 이에 더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1695년(숙종 21)부터 5년 가량 계속되었던 이른바 ‘을병대기근’의 피해는 특히 극심하였다.⁵⁵ 1690년대 후반 잇따른 기근에 타격을 입은 조선 사회는 팔도의 아사자가 수만에 이르고⁵⁶, 굶주림으로 실성한 백성이

53 순치·강희 연간 청 칙사의 파견 빈도에 관한 통계 수치는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민음사, 2012), 191쪽 내용을 참고하였다.

54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일조각, 1970), 75쪽, 표5 참고.

55 이 당시 재난이 초래한 위기 상황과 관련한 설명은 김성우의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호(1997)가 참고된다.

56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3월 12일 2번째 기사.

식인을 자행하는 등 참혹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⁵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력은 점차 고갈되어 갔기에, 청으로부터 쌀을 들여오자는 청곡(淸穀)의 논의가 1696년(숙종 22) 제기되었다.⁵⁸ 이즈음은 ‘을병대기근’과 맞물린 기근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로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민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 시기 이 지역에서 기근으로 인해 사망한 자가 만여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므로 심각한 기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웃 나라에 조곡(糶穀)을 청하는 전례에 따라 청에서 곡물을 빌려오는 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⁶⁰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1697년 9월 30일 청과 미곡을 거래할 시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조선의 자문이 발송되었다.⁶¹ 같은 해 11월경 미곡의 무역을 허락해달라는 조선의 청이 청 예부에 전달되었고, 강희제는 조선의 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예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는 조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시장 개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⁶² 이에 따라 성경(盛京)에 저장된 쌀 2만 석을 조선에서 무역하기를 원하는 염상(鹽商)에게 팔아 중강(中江) 지방에서 무역하도록 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⁶³, 관련한 제반 조치가 시행되었다.

57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2월 5일 1번째 기사

58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11월 4일 1번째 기사. ‘淸米’ 도입의 경과와 반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문기, 「淸米, 癘疫, 大報壇: 강희제의 海運賑濟와 조선의 반응」, 『역사학연구』 53호(2014) 참고.

59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7월 5일 2번째 기사.

60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9월 21일 1번째 기사.

61 『同文集考』 原編 卷46, 交易2, 康熙 36年 9月 30日, 「請市米穀咨互錫賚」.

62 『聖祖仁皇帝實錄』 卷186, 康熙 36年 11月 22日, “禮部議覆, 朝鮮國王李焯疏言, 請於中江地方, 貿易米糧, 應不準行. 得旨, 朕撫馭天下, 內外視同一體, 並無區別. 朝鮮國王, 世守東藩, 盡職奉貢, 克効敬慎. 今聞連歲荒歉, 百姓艱食, 朕心深為憫惻. 彼既請糶以救凶荒, 見今盛京, 積貯甚多, 著照該國王所請, 於中江地方, 令其貿易.”

63 『聖祖仁皇帝實錄』 卷186, 康熙 36年 12月 3日, “戶部遵旨議覆, 盛京所貯米石, 運至中江地

조선에서는 이듬해 1월 2일 “청에서 개시를 허락하고 속미(粟米) 4만 석을 수로와 육로로 나누어 운반하여, 이부와 호부의 두 시랑으로 하여금 나와서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⁶⁴ 실제로는 1698년 1월 26일 강희제의 유지(諭旨)에 따라 미곡 2만 석을 중강으로 운반하여 무역하고, 1만 석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⁶⁵, 조선의 군신이 이 쌀을 관서지방과 서울로 분급하여 진흙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⁶⁶ 이처럼 장기간의 논의 끝에 결정된 청국의 방안은 강희제의 전격적인 결정과 이에 의거한 제반 조치의 신속한 시행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졌다.⁶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선과 청 사이에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지성사대의 관계가 정착된 듯이 보이는데, “대대로 동쪽 변방을 지키면서 직공(職貢)을 받들기를 공손 근실히 하였다”면서 조선의 청을 수락한 강희제의 신속한 결정이 이즈음 청의 조선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시사한다고 하겠다.⁶⁸

그러나 종래 ‘복수설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청으로부터 쌀을 가져와

方貿易，應令殷實誠信之人，取具地方官印結，前赴盛京，領來輓運，其米價銀兩，俱照盛京時價，交與盛京戶部，所賣米石，不許過倉石二萬石。其朝鮮進貢來使，有貿穀帶去者，聽其糴去。又鹽商張行等，呈稱情願前往朝鮮貿易，應令將銀買倉米二萬石，運至貿易，俟朝鮮國歲稔之時停止。此時運往米石，令伊國將所產之物，酌量兌換，可也。從之。”

64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월 2일 2번째 기사.

65 『聖祖仁皇帝實錄』 卷187, 康熙 37年 1月 26日. “諭大學士等，運往朝鮮國米石，著侍郎陶岱，共運至三萬石。以一萬石，賞賚朝鮮國。以二萬石，平糶。”

66 『승정원일기』 376책, 숙종 24년 1월 28일.

67 『聖祖仁皇帝實錄』 卷189, 康熙 37年 7月 10日. “吏部右侍郎陶岱等疏言，等遵旨賑濟朝鮮，於四月十九日進中江。臣等隨將賞米一萬石，率各司官監視，給該國王分賑。其商人貿易米二萬石，交與戶部侍郎貝和諾，監視貿易。據朝鮮國王李焯奏，皇上創開海道，運米拯救東國，以甦海濱之民。飢者以飽流者以還。目前二麥熟稔，可以接濟八路生靈全活無算下所司知之。”

68 『聖祖仁皇帝實錄』 卷186, 康熙 36年 11月 22日. “禮部議覆，朝鮮國王李焯疏言，請於中江地方，貿易米糧，應不準行。得旨，朕撫馭天下，內外視同一體，並無區別。朝鮮國王，世守東藩盡職奉貢克効敬慎。今聞連歲荒歉，百姓艱食，朕心深為憫惻。彼既請糴以救凶荒見今盛京，積貯甚多，著照該國王所請，於中江地方，令其貿易。”

진흥에 활용하는 정책은 피치 못할 반발을 초래하였다. '청의 쌀을 빌어다 먹는 것'은 춘추대의를 망각한 행위이자 이적·금수가 되는 것과 다름없으며, 원수인 청으로부터 씻지 못할 치욕을 입은 것으로 여기는 여론이 조정 일각에서 대두되었던 사실은 '청미'의 도입으로 인해 고조된 반청의식의 단초라고 볼 수 있겠다.⁶⁹ 청에 대해 여전히 심복하지 않았던 이들의 입장에서 강희제의 선처가 오히려 큰 치욕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당시 청과 조선은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맺고서 상호 간에 사대와 자소의 예를 성실히 이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강희제의 미곡 지원은 소국을 향한 대국의 의리를 준수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유자들이 깊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반청의식은 이와 같은 청 황제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대청사대의 성실한 시행에 힘입은 관계의 개선에 반비례하여 조선 식자층의 반청의식은 고조되는 일종의 길항 관계가 엄존하였던 것이다.

2. 대청사대와 춘추대의의 공존

주지하듯 조선 시기 국가는 유교적 통치이념의 보급과 도덕 규범의 장려를 위해 충절·효열자의 현창 사업에 지속적인 공을 들였다. 효자·충신·열녀 등 현창 대상자를 위한 정표를 건립하고, 유족과 후손들을 위한 부역을 면제하고(復戶), 포상을 시행하였다. 특히 잇따른 전란에 이은 명·청 교체를 거치며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전란 순절인에 대한 현창의 필요가 발생하였다.⁷⁰ 그러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전란 사상자의

69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6월 30일 2번째 기사.

70 임란 시 東征한 명 장수 및 명군 전사자를 위한 壇祠의 건립과 제향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육,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大報壇) 제향」, 『종교연구』

허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절의 여부를 가리는 작업은 수월치 않았다.

인조, 효종 연간에는 양란 순절·척화인 현창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표와 사액(賜額)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조선의 내정에 대한 청의 감시가 삼엄하던 시기였으므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던 절의인의 표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의 시행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⁷¹ 현종 대에는 주요 척화인사의 현창 사실이 청에 알려질 경우 사달이 날까 두려워 시행을 주저하였던 정황이 보이는데, 삼학사의 포상 문제를 제기한 송시열(宋時烈)의 건의를 현종이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였다.⁷² 청의 긴밀한 감시로 인해 본격적인 현창 사업 시행은 현종 연간에도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17세기 후반의 숙종 연간에는 양란 순절·척화인의 현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숙종 대의 현창 사업 시행을 위한 논의는 1681년(숙종 7)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발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은 경신환국(1680) 이후 서인의 집권에 따른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병자호란 시 척화를 주도했던 서인계 인사들에게 있어 순절·척화인의 현창은 곧 자파의 집권 명분을 강화하는 효과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³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대체로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던 인조-현종 연간의 현창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42호(2006); 우경섭, 「17-18세기 임진왜란 참전 明軍에 대한 기억」, 『한국학연구』 46호(2017) 참고.

71 김창수, 「18-19세기 병자호란 관련 현창과 기억의 유지」, 『조선시대사학보』 81호(2017), 140쪽 참고.

72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월 21일 1번째 기사.

73 숙종 연간을 전후한 시기 병자호란 척화 순절인 추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일조각, 1990);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 34호(2010) 등 논저가 참고된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 대에 충신으로서 정표된 이는 총 139명으로, 인조 대(72), 효종 대(7), 현종 대(51)의 충신 정표자를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9명이 많다.⁷⁴ 아울러 인조-현종 연간의 충신 정표자 중에는 이괄의 난과 관련된 인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적인 면에서도 숙종 대에 양란 순절·척화인 정표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 봉당의 입장과 정치적 이해에 맞물린 현실적인 조건들을 두루 고려해야 할 필요에 주목하게 된다. 우선 앞선 시기 현창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였던 중요한 요인인 청의 존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현창 사업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왕의 의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관련하여, 이 시기 현창 사업의 중요한 사례인 현절사(顯節祠)의 건립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671년(현종 12) 송시열이 『삼학사전』을 저술한 이래 대표적인 척화인사로 꼽혀온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의 제향을 위한 사우 건립 요청은 앞선 왕대부터 제기된 바 있다.⁷⁶ 그러나 청의 시비를 염려하여 실행되지 못하였던 것이 서인의 재집권으로 인해 대청 척화인사가 재조명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숙종은 오달제를 비롯한 삼학사가 의리를 지켜 순절하였던 사실을 높이 기리며 그 자손에 대한 은전을 베풀고 그들을 위한 사우를 건립하고자 하였다.⁷⁷ 그러나 당시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사우 공사는 즉시 실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체되다가 1688년(숙종 14)에 이르러서야

74 반면 효자나 열녀에 대한 정표는 인조나 현종 연간에 더욱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각 왕대별 정표 사업의 주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왕대별 정표 현황 통계는 박주(1990), 위의 책, 16쪽, 표3 참고.

75 박주(1990), 위의 책, 167-191쪽 참고.

76 정옥자, 『조선후기 지성사』(일지사, 1991), 20쪽 참고.

77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1월 30일 1번째 기사.

속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⁷⁸ 그런데 장기간 지체되던 현절사 건립이 1688년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연유는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진 숙종의 남한산성 행차에서 찾을 수 있다. 이즈음 숙종은 여주에 있는 효종 영릉 참배를 위해 행차하면서 남한산성에 두 차례 거둥하였는데, 현장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는 즉시 공사의 속개를 명하였던 것이다. 1637년 ‘정축하성’ 이래 국왕이 남한산성에 친림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니, 국왕의 이례적 행보에 힘입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하겠다.⁷⁹

1688년 2월 2일 영릉 전알을 위해 행차하였던 숙종은⁸⁰ 2월 26일 광진 나루를 건너 30일 환궁하기까지 4박 5일의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⁸¹,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남한산성에 거둥하여 병자호란 시 산성 주변에서 벌어졌던 전투의 현장을 찾았다.⁸² 이때 숙종은 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자취를 직접 돌아보며 그 충절을 기리고 관련인에 대한 응송한 조치를 지시하는 등⁸³ 병자호란 당시 임금의 곁을 지켰던 상하 신민들의 충절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표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의정 남구만의 계문을 통해 남한산성의 사우가 아직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속히 공사를 시행하라 명함으로써 현절사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남한산성은 청에 대한 항전의 상징과 같은 공간으로서, 국왕이 이곳에

78 『승정원일기』 327책, 숙종 14년 2월 29일.

79 숙종 이후 영조, 정조, 철종, 고종이 남한산성에 행차하였다. 조선 후기 국왕의 남한산성 행차와 관련 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문식, 「조선후기 국왕의 南漢山城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60호(2012); 김우진, 『숙종대의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이 참고된다.

80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2월 2일 3번째 기사.

81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2월 26일 1번째 기사; 2월 30일 1번째 기사.

82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2월 26일 7번째 기사.

83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2월 29일 2번째 기사.

직접 행차하여 전사자를 추모하고 사우를 건립하였던 사실은 앞서 현종이 보인 청에 대한 경계심을 생각하면 상당한 과격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 1680년 이래 근 10년 정도는 조·청 양국에 범월과 문서위식, 영조칙의례 등으로 인한 시비가 잦았다. 특히 범월과 같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불시에 청의 칙사가 도래하는 일이 잦았던 만큼 조선에 대한 청의 의구심을 자극하는 행위는 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청 간의 분쟁이 잦아들고 점차 관계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자연스레 의례적인 사행 이외에 갑작스런 칙사의 파견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사우의 건립과 같은 가시적인 현창 사업의 시행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실제로 숙종 연간에 남한산성의 현절사를 위시하여 전국에 여러 개의 사우가 건립·사액되어 많은 반청 순절·척화인이 배향된 사실은⁸⁴ 1680년 이래 고조되었던 청과의 갈등이 점차 잦아들고, 대청 관계가 안정되어 가고 있던 숙종 중반의 정세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시기 들어 친명배청의 상징과 같은 임경업(林慶業)의 사우 건립과 사액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실에는 숙종 중반 이후 가시화된 대청 외교의 안정세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숙종 연간에는 종묘 전알례의 정식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전 왕대에 비해 국왕의 친향 의례가 대폭 확대되고 관련 사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왕이 직접 수행하는 의례의 중요성에 착안한 조치가 빈번히 시행된 바 있다.⁸⁵ 문묘에 정기적으로 친림하여 선성(先聖)을 배알하고, 충신의 사우에 대한 치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숙종의 행보는 사립

84 당시 건립된 사우의 자세한 면모는 김창수, 「18-19세기 병자호란 관련 현창과 기억의 유지」, 『조선시대사학보』 81호(2017), 142쪽, 표1 참고.

85 종묘 전알례의 거행 및 정식화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진혜, 『조선후기 종묘의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제2장 참고.

공론과 소통하는 왕정의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의례의 정치적 효용에 천착하였던 숙종의 통치 철학을 고려하였을 때, 숙종이 존주대의를 선양하는 독점적 의례 공간인 대보단의 신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실현시켰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명이 멸망한 지 정확히 60년이 되는 1704년(숙종 30) 초두 숙종은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명 신종을 제항하는 사당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주창하였다.⁸⁶ 이에 관료들 사이에서 제후국에서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참례의 혐의가 있으며⁸⁷, 혹시라도 청나라에서 시비를 제기하여 묘우를 허물게 되는 사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회의론이 일기도 하였지만, 1년에 가까운 긴 논의를 이어간 끝에 대보단 창설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⁸⁸ 물론 이때 건설된 대보단은 숙종이 애초에 의도하였던 바와 같은 묘우가 아닌 제단의 형식을 띠고 있었고, 건립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론계 관료들과 주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론계 인사들을 포함한 신료 전반의 참여와 동의는 결국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⁸⁹ 그럼에도 조선 시기 전반에 걸쳐 선례가 없었던 새로운 의례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존주대의의 선양

86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1월 10일 1번째 기사.

87 이육, 「조선 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大報壇) 제향」, 『종교연구』 42호(2006), 134쪽 참고.

88 대보단 설치를 위한 논의와 공사는 1704년 1월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되지만, 실제 제의를 시작한 것은 1705년 3월이었으므로 대보단의 건립년도를 1705년으로 기록한 자료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양력을 준용하여 1705년에 설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명이 멸망한 1644년의 1주갑에 맞추어 설치된 대보단의 의의를 고려하여 1704년이라고 표기하겠다.

89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 사회적 기능」, 『한국문화』 32호(2003), 165쪽 참고.

을 국왕이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사실은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숙종은 대보단 건립을 통해 명나라 황제에 대한 의례의 독점권을 새로이 마련함과 동시에 신료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차별적인 권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맞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청사대의 시행이라는 불가역적 시대 조류 앞에서 대보단의 설치를 통한 국왕 권위의 회복과 존주대의로 수렴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근간 바로잡기는 곧 변화한 국제질서에 순응해야만 하는 현실과 전통적 의리론 사이의 길항 관계를 해소하고, 국왕의 권위를 찾기 위한 노력과도 그 맥락이 상통하는 행위라 추론할 수 있다.⁹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보단의 설립과 명 황제에 대한 제향을 통한 존주대의의 강조는 단순히 명에 대한 사대의식과 모화사상을 답습하는 행위가 아니라⁹¹, 조선이 전통적으로 고수 하였던 도덕적 가치와 의리에 대한 보수(保守)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조선 고유의 유교적 지배이념을 복원·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과의 마찰은 피하되 종래의 중화질서에 대한 지향을 큰 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적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활로로서의 의미 또한 지닌다고 하겠다.⁹²

90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 특히 사림의 건립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연구』(집문당, 1997), 101쪽 참고.

91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44쪽, 280쪽 참고.

92 허태용은 이즈음의 중화주의적 사조의 변주를 일컬어 “중화회복의식”에서 “중화 계승의식”으로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중화론’, ‘조선(적)중화사상’ 등의 입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주목된다. 허태용이 말하는 “중화회복의식”에서 “중화계승의식”으로의 변화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중화 회복을 기대하기 보다는 유교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선을 중화문물의 ‘유일하고 정당한 계승자’로 규정하는” 입장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허태용, 「영·정조대 중화계승의식의 강화와 송·명 역사서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42호(2007), 60-66쪽 참고)

IV. 맺음말

1680년대 후반 청의 외교적 압박이 서서히 잦아들고 조·청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 시기 내내 지속되었던 청의 압박에 적절히 대처하고 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관계의 변화로 인해 조선이 전통적으로 그려 왔던 이념 지향이 급격히 시효를 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내부의 반발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념 기반을 새롭게 다잡고 왕정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명 황제에 대한 국왕의 독점적인 의례 공간인 대보단이 신설된 사실은 그 의미가 심장하다.

대보단 의례는 조선이 전통적으로 지향하였던 중화주의적 문화가치에 기초한 의리 명분과 청 중심의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현실 사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의례적 장치였다. 이는 바로 청과의 갈등은 지양하되 종래부터 고수해 온 중화주의적 관념은 그대로 견지하는, 이념과 현실의 길항을 해소하고 청과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³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인 의례의 주도권은 바로 국왕이 쥐는 것이었다.

국왕의 친행 의례는 당위적인 이념의 순수한 표현 혹은 실현을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의례 주체의 차별적인 가치와 권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대보단 건립에 투영된 당대의 정치·외교적 맥락과 그 시대적 함의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숙종은 대보단을 설치하고 의례를 친히 행함으로써, 비록 명은 멸망하고 없더라도 조선만큼

93 임부연,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 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5호(2009), 181쪽.

은 여전히 명과 조선 사이의 의리를 소중히 고수하며, 제후국의 도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중화주의적 명분과 의리를 선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숙종 즉위 초반까지는 복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명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질서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이 중원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한 1680년대 이후 대청사대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며 조선의 존립과 안경을 위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사대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의 조야에서는 유교 문화적인 차원에서 조선을 중화문물의 유일하고 정당한 계승자로 규정하는 관념이 대두되었다. 현재 ‘조선중화주의’로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사유체계는 정치·문화 양면에서 명이 독점하고 있던 중화의 위상을 문화적인 차원에 국한하여 조선이 전유함으로써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한 동아시아 질서를 관념 속에서나마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⁹⁴ 숙종은 대보단을 통해 이와 같은 사유를 가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엄연한 대청사대의 현실과 강고한 반청의식 사이의 길항을 해소하고 왕정의 명분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⁹⁵

94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일지사, 1998).

95 필자는 익명의 심사자들로부터 본 연구의 서술 내용을 보강하고 논지의 개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보완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본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의견들임에도 시간과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소중한 심사의견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인조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동문회고』, 『통문관지』, 『국조오례의』, 『聖祖仁皇帝實錄』.

2. 단행본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구범진, 『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2012.

김문식,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세창, 2017.

김영식,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아카넷, 2018.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夫馬進,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이화자,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2008.

_____, 『한중국경사연구』. 해안, 2011.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옥자, 『조선후기 지성사』. 일지사, 1991.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3. 논문

김경록, 「朝鮮時代 使臣接待와 迎接都監」. 『韓國學報』 117호, 2004, 73-120쪽.

김문식, 「조선후기 국왕의 南漢山城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60호, 2012, 105-138쪽.

_____, 「조선시대 外交儀禮의 특징」. 『동양학』 62호, 2016, 77-98쪽.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호, 1997, 12-47쪽.

김우진, 『숙종대의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윤주, 「순조대 『빈례총람(賓禮總覽)』의 편찬과 빈례 정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 김창수, 「18-19세기 병자호란 관련 현창과 기억의 유지」. 『조선시대사학보』 81호, 2017, 137-168쪽.
- _____, 「조선후기 조선·청 관계와 국왕의 건강 문제: 숙종 초반 교영례(郊迎禮)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 통권 66호, 2020, 999-1028쪽.
-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 사회적 기능」. 『한국문화』 32호, 2003, 153-179쪽.
- 손성욱, 「淸 朝貢國 使臣 儀禮의 形成과 變化」. 『동양사학연구』 143호, 2017, 273-315쪽.
- _____, 「王世子 冊封으로 본 淸·朝 관계(康熙 35년-乾隆 2년)」. 『동양사학연구』 146호, 2019, 193-230쪽.
- 신진혜, 『조선후기 종묘의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우경섭, 「17-18세기 임진왜란 참전 明軍에 대한 기억」. 『한국학연구』 46호, 2017, 323-354쪽.
- 유바다, 「朝鮮 初期 迎詔勅 관련 儀註의 성립과 朝明關係」. 『역사민속학』 40호, 2012, 123-160쪽.
- 이명제,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욱, 「조선후기 전쟁의 기억과 대보단(大報壇) 제향」. 『종교연구』 42호, 2006, 127-163쪽.
- 이정일, 「조선후기 기자인식에 나타난 유교문명과 보편성」. 『韓國史學報』 37호, 2009, 203-232쪽.
- 이재경, 「삼변(三藩)의 란(亂) 전후(1674-1684) 조선의 정보수집과 정세인식」. 『한국사론』 60호, 2014, 185-237쪽.
- _____, 「大清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호, 2019, 403-446쪽.
-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3호, 2012, 131-163쪽.
- 임경준, 「三藩의 亂과 淸朝의 盛京地域 支配體制 強化: '新滿洲' 佐領의 이주와 三藩의 安插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임부연,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 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5호, 2009, 159-182쪽.
- 임현채, 「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朝鮮의 對淸 태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혜은, 「숙종 초기 평안도의 변장 증설과 방어 체제의 변화」. 『사학연구』 120호, 2015, 37-74쪽.
-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호, 2006, 69-88쪽.
- 지두환, 「조선 병자호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한국학논총』 34호, 2010, 795-819쪽.
- 최종석, 「鞠躬인가 五拜三叩頭인가?」. 『한국문화』 83호, 2018, 227-263쪽.
- _____, 「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86호, 2018, 139-177쪽.
- 한형주, 「對明儀禮를 통해 본 15세기 朝-明관계」. 『역사민속학』 28호, 2008, 39-75쪽.
- 허태용, 「17세기 중·후반 중화회복의식의 전개와 역사인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134, 2006, 75-109쪽.
- _____, 「영·정조대 중화계승의식의 강화와 송·명 역사서의 편찬」. 『조선시대사 학보』 42호, 2007, 237-269쪽.
- _____, 「17·18세기 北伐論의 추이와 北學論의 대두」. 『대동문화연구』 69호, 2010, 373-418쪽.
- _____, 「성리학으로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연구 경향의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7호, 2019, 317-350쪽.
- 홍성구, 「청질서의 성립과 조청관계의 안정화: 1644-1700」. 『동양사학연구』 140호, 2017, 155-194쪽.

국문초록

1680년대 이후 청이 중원의 헤게모니를 확고히 장악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청의 외교적 압박이 강화되었다. 청 제국질서에 적응하고 국가를 부지하기 위해 조선은 적극적인 대청사대를 시행하였으며, 1690년대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점차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사대처의 교체라는 중대한 변화 속에서 조선이 전통적으로 견지하였던 화이론적 사유체계는 시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의 군신은 이념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고 왕정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조·청 관계의 안정세가 명확하였던 1700년대 초반 명 황제에 대한 국왕의 독점적 의례 공간 대보단이 건립된 사실은 그와 같은 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보단은 조선이 종래 지향하였던 존주대의의 이상과 대청사대의 현실 사이의 길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례적 장치였다. 청과의 마찰은 피하되 종래의 중화보편에 대한 지향을 큰 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적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활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숙종은 대보단 의례의 친행을 통해 국왕의 권위를 가시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존주대의를 앞장서 선양함으로써 왕정의 명분을 강화하였다.

투고일 2021. 3. 21.

심사일 2021. 4. 26.

게재 확정일 2021. 5. 11.

주제어(keyword) 청 제국질서(the Imperial Order of the Qing Empire), 중화(the Center of Civilization), 대보단(the Altar of Great Gratitude), 국조오례의(*Book on the Five Rites of the State*)

Abstract

The Context of Joseon-Qing Relations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the Periodical Foundation of the Altar of Great Gratitude

Kim, Sunghee

Since the 1680s, the Qing Empire's diplomatic pressure on Joseon has intensified. In order to adapt to the Imperial Order of Qing, Joseon actively implemented diplomatic rituals.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Qing have gradually stabilized since the 1690s. However, the opposition prevailed among the intellectual class of Joseon and their hostility against Qing was heightened. Thus, the king of Joseon and his vassals made effort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basis of ideology and strengthen the cause of the monarchy. The fact that the king's exclusive ritual space for Ming Emperor, the Altar of Great Gratitude (K. Taebodan)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1700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efforts. Taebodan was a ritual device for practicing the ideals of the center of civilization that Joseon had long been internalized. It was an efficient political tool which enabled the king to avoid friction with the Qing and to maintain the traditional ideological system of Joseon. It was also a space to visualize the ritual authority of the king.